

의안번호	2200003
의 퇴 인	박충권 의원
회 답 일	2024. 6. 24.
추계번호	24B0318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홍보사업,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 3,000만원(연평균 1억 2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홍보사업 등	30	31	32	33	34	160	32
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기념	90	92	94	96	98	470	94
계	120	123	126	129	132	630	126

주: 1. 향후 기본계획,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비 증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이하 “기업부설연구소등”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·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5조(통계작성 및 실태조사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(제2항)	
3	안 제6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
4	안 제7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“인정기준”이라 한다)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5	안 제11조(기술개발 지원)	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1.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.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.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2조(연구개발 인력 지원)	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1.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사업 2.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 3.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사업 4.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사업 5.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·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13조(기업부설 연구소등의 운영 교 육)	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,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등에 관한 교육과정(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)을 개설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4조(금융 지원)	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·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(제2항) 정부는 제2항에 따른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9	안 제15조(조세에 관 한 특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0	안 제16조(우수 기업 부설연구소의 지정 등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정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7항)	
11	안 제17조(홍보사업 등)	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.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.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12	안 제18조(유공자 포 상 등)	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13	안 제19조(기업 연구 개발 진흥의 날)	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,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4	안 제20조(기업 연구 개발 지원센터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·지원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		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,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·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5	안 제22조(현장조사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(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수행여부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하여 조사(이하 “현장조사”라 한다)하도록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통계작성 및 실태조사)	—	현행 사업 존재 —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
2	안 제6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)	—	
3	안 제7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)	—	
4	안 제11조(기술개발 지원)	—	
5	안 제12조(연구개발인력 지원)	—	
6	안 제13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)	—	
7	안 제16조(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)	—	
8	안 제18조(유공자 포상 등)	—	
9	안 제20조(기업 연구개발 지원 센터)	—	
10	안 제22조(현장조사)	—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1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규정
12	안 제14조(금융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·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신용보증기금·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자금의 융자·투자 및 보증제도는 운영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 곤란
13	안 제15조(조세에 관한 특례)	-	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세율에 따라 추계할 대상
14	안 제17조(홍보사업 등)	○	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15	안 제19조(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)	○	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(단위: 백만원)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4년)		
안 제5조(통계작성 및 실태조사)	사업	개요	'24예산
	연구개발활동 조사(기업부문)	- 연구개발활동(기업부문)에 대한 국가통계 작성 및 분석(국가지정 통계 제105001호) - 국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조사 및 국가 R&D 정책수립에 활용	260
안 제6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)	사업	개요	'24예산
	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·지원(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-시스템 운영·관리)	기업연구소 신고·관리 시스템, R&D역량진단시스템 등 유지 보수	800
안 제7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)	사업	개요	'24예산
	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·지원(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-제도 운영)	기업연구소 신규인정, 변경신고, 취소 등 제도 관리 소요비용 지원	1,130
안 제11조(기술개발 지원)	사업	개요	'24예산
	기업부설연구소 R&D역량강화 지원	기업부설연구소를 R&D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, 상위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지원	6,816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4년)		
안 제12조(연구개발인력 지원)	사업	개요	'24예산
	인재활용 확산 지원(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)	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 및 취업 지원	2,942
	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(R&D)	(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) 신진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※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	12,462
		(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) 공공연·대학·대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R&D 역량 강화 ※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	10,293
		(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) 공공연구기관의 고급인력파견을 통한 기술노하우 전수 및 R&D 수행지원 ※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	6,780
안 제13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)	사업	개요	'24예산
	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·지원(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-기본교육과정)	기업의 원활한 기업연구소 관리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교육 과정 개설·운영 소요비용 지원	120
안 제16조(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)	사업	개요	'24예산
	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·지원(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운영)	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심사·선정 지원	300
안 제18조(유공자 포상 등)	사업	개요	'24예산
	우수과학자포상(대한민국엔지니어상)	우수성과 과학기술자 발굴·포상(산업현장 엔지니어 대상 포상)	190
	우수과학자포상(IR52장영실상)	우수성과 과학기술자 발굴·포상(신기술제품 대상 포상)	82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4년)		
안 제20조(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)	사업	개요	'24예산
	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·지원(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운영)	출연(연), 대학 등의 기술전문가의 기술컨설팅 및 후속 R&D 지원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애로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	1,691
안 제22조(현장조사)	사업	개요	'24예산
	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·지원(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-현지 확인)	기업연구소 준수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비용 지원	1,8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

-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7조의 홍보사업 등, 안 제19조의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
- (홍보사업 등)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,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매년 포럼 등 행사를 개최하고, 성과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가정
 - (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) 제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, 교육,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, 매년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- 홍보사업 및 기념일 행사 등 추계에 사용한 단가는 추계기간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¹⁾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홍보사업 등(안 제17조)

- 제정안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, 홍보사업 등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억 6,000만원으로 추계(연평균 3,200만원)

-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: 성과사례집 등 자료발간 1천만원 × 1회 = 1천만원
-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: 포럼 등 행사 개최 1천만원 × 2회 = 2천만원
-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: 미실시(현 시점에서 알 수 없음)

※ 자료 발간 비용 및 행사 개최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

[표 3] 홍보사업 등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홍보사업 등	30	31	32	33	34	160	32

주: 향후 인쇄물 발행 부수 및 단가, 포럼 등 행사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(%)

2026	2027	2028	2029	2030
2.2	2.1	2.1	2.1	2.0

□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기념(안 제19조)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개최한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행사를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,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행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7,000만원으로 추계(연평균 9,400만원)

－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행사(2023) 비용: 9천만원

· 홍보, 영상물 제작 등 2천만원

· 행사대행 7천만원

※ 홍보 영상물 제작 비용 및 행사 대행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

[표 4]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기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기념	90	92	94	96	98	470	94

주: 향후 홍보 영상물 제작 및 행사대행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개요²⁾

- (도입배경) '70년대 중반 이후,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R&D 분야에서 공공연구소뿐만 아닌 민간기업의 역량 제고·활용 필요성 인지

→ '81년 10월, 46개의 기업연구소를 최초로 인정하고 기술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연구요원 병역특례 등 지원제도 신설

- (근거법) 「기초연구법」 제14조의2~제14조의4

- (인정요건) 기업유형별 일정 수 이상의 자격있는 연구전담요원* 고용 및 독립적 연구공간(고정벽체·출입문, 50m² 이하는 칸막이로도 허용) 확보

*연구 외 업무(생산·판매·영업 등)를 겸직하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보지 않음(단,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가능)

<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및 자격요건 >

		연구전담 요원 수	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(이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)	
			과학기술분야 연구소	서비스분야 연구소(산업디자인 포함)
기업 부설 연구소	대기업	10명 이상	▶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	▶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
	중견기업	7명 이상		▶서비스 분야 1급 이상 국가자격
	중기업*	5명 이상	▶상기 자격요건	▶상기 자격요건
	소기업	3명 이상	▶자연계 전문학사 + 연구경력 2년 ↑	▶전문학사 + 연구경력 2년 ↑
	벤처기업 등**	2명 이상	▶마이스터·특성화고 + 연구경력 4년 ↑	▶마이스터·특성화고 + 연구경력 4년 ↑
연구개발전담부서		1명 이상	▶산업기사 + 연구경력 2년 ↑ ▶기능사 + 연구경력 4년 ↑	▶산업기사 + 2년 이상 연구경력 ▶기능사 + 4년 이상 연구경력

*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로부터 1년까지는 연구전담요원 수 3명 허용

** (연구전담요원 수 2명 기준 적용 기업) 벤처기업, 연구원·교원 창업기업, 창업3년 이내 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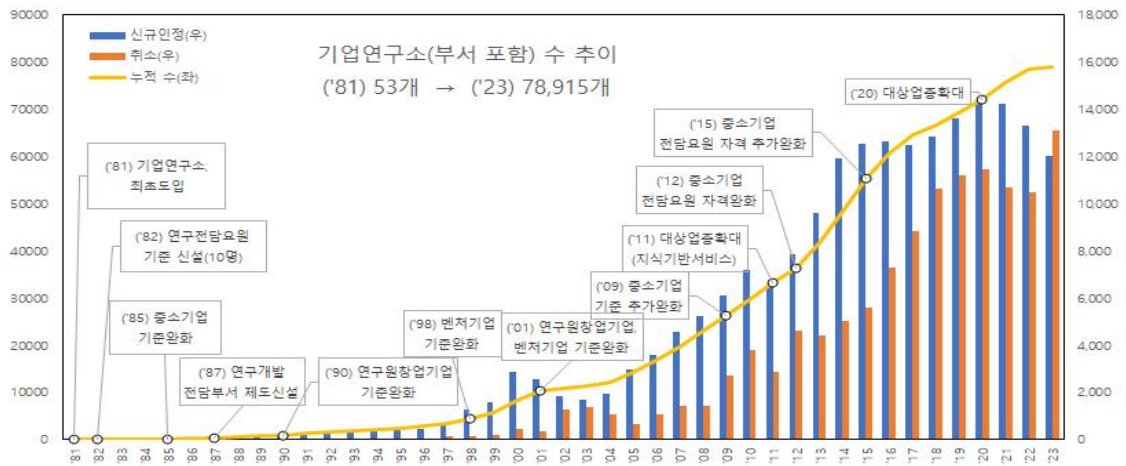
- (준수사항) 생산·판매·영업 등을 담당하는 직원 고용, 연구인력과 연구 시설이 같은 소재지 위치, 매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 제출 등

2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」 중 발췌

- (주요 지원사항) 연구소 설치 기업은 조세지원 대상이 되며, 여러 부처의 R&D 지원사업 신청자격 획득 또는 평가시 가점 부여

제도·사업명	지원내용	연구 소	전담 부서
■ 조세지원(국세)	▶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,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등	○	○
■ 조세지원(지방세)	▶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및 사용중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일부 감면	○	×
■ 각종 정부 R&D 사업	▶ (신청자격 또는 가점) 각종 정부 R&D사업에 참여하여 과제 수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	○	△
■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(산업부, 중기부)	▶ (신청자격 획득) 청년 석박사·고경력 연구인력 채용, 공공연구인력 파견 등 연구인력 충원시 인건비 일부 지원	○	○
■ 전문연구요원 제도(과기부, 병무청)	▶ (신청자격 획득) 병역자원 일부를 해당 기업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	○	×

[참고자료 2] 기업부설연구소 증가 추이 및 제도개편 연혁³⁾



- (‘81년)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및 조세지원, 연구요원 병역특례 신설
- (‘82년)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 신설
(자연계분야 학사이상 학위를 보유한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확보)
- (‘85년) 중소기업, 국외 소재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5명으로 완화
- (‘87년)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 도입
- (‘90년) 과기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(창업 5년 이내)은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3명으로 완화
- (‘98년) 벤처기업은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
- (‘01년) 창업 5년 이내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은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2명으로 완화(‘11년에 ‘창업 5년 이내’ 조건 폐지)
- (‘09년)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3명으로 ‘11년까지 한시 완화
(‘11년에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3명으로 항구화)
- (‘10년) 신고처리기간 기준 30일에서 10일로 단축(‘16년에 7일로 추가 단축)
- (‘11년)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분야에 지식기반 서비스분야(11개 업종) 추가
- (‘12년)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(마이스터고, 특성화고 졸업자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(연구개발전담부서 1년 이상 근무 포함) 이상인 인력)
- (‘14년)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2명으로 완화
- (‘15년)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추가 완화(기술·기능분야 기능사 자격보유자 추가, 연구개발전담부서 1년 이상 근무조건 폐지)
- (‘20년)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분야를 6개 분야(유흥업 등) 제외 모든 분야로 확대
- (‘22년) 인정처리 기간 7일에서 10일로 연장,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인 유예기간(1년 이내) 부여, 연구전담요원 근무장소 규제완화(재택근무 등)

3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」 중 발췌